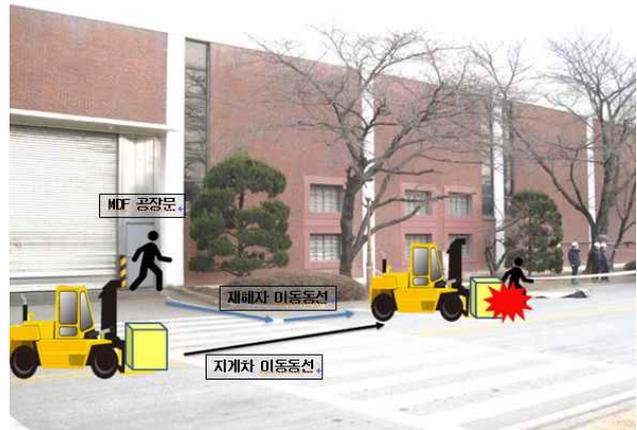


사업장내 사내도로 이동 중 지게차에 추돌 사망

재해 개요

2018년 2월 전북관내 (주)OO OO공장 사업장에서 사내 협력업체 OO(주) 소속 재해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사내도로로 이동 중 뒤쪽에서 좌측도로로 역주행하던 지게차에 의해 추돌하여 119에 신고후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8년 2월 사망함.

재해 사진



재해발생 원인

-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지게차 제한속도를 정하고 각종 위험요소에 대한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작업지휘자로 작업을 지휘도록 하여야 하고 지게차와 근로자의 접촉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하나 미실시함.
- 지게차의 마스트 등 구조물로 인하여 지게차 운전자 시야의 사각지대가 있어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음.

예방대책

-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할 경우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·낙하·전도·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과 지게차의 운행경로(역주행 금지) 및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함
- 지게차의 마스트 등 구조물 또는 적재물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전·후방 카메라 설치 및 지게차와 근로자외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석이 있는 전용 보행통로 설치(권장사항)